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9,285,575	29,078,567
일반회계	907,754,405	27,232,632
특별회계	61,531,170	1,845,935
기타특별회계	61,531,170	1,845,93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4,927	9,4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0,099,296	602,979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621,231	288,637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6,481,862	794,456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70,226	2,107
수질개선 특별회계	76,523	2,29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098,810	32,964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39,244	25,177
주차장 특별회계	2,929,051	87,87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928,947천원(일반 6,000,000, 재해·재난목적 81,928,947)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